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방안 건의



권성균
LG전자 부장

**지주회사제도는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집단 문제의 좋은 해결 대안이므로
기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장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자회사 지분율은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하는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시장에서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문제제기

1999년 2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말 현재 8개사가 설립 또는 전환신고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수리되고 2건은 심사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만으로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고 기업구조조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최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조조정 차원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행 기업집단체제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한 단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주회사 제도 허용 후 요건완화 요구에 대한 논거: 지주회사는 과연 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최근 대주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현황을 발표하고 기업집단별로 결합재무제표가 처음 공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7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을 두어 금지해 온 이래 IMF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위기극복의 중대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허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지주회사에 대한 시각은 그동안 대체로 양분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즉 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여러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주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이 용이하고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하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주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금지와 허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999년 2월부터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면서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순기능은 최대한 반영하고 역기능은 최

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의 지분율 등 <표1>에서와 같이 부분적 규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한적 허용에 대한 현행 법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행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규제사항은 개별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신설된 만큼 그 요건 또한 엄격하다는 점은 있으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설립이 용이한 반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집단이 현행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주식이동 등을 통해 출자구조를 재편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이라는 물리적 부담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집단 자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근간은 기업집단지정

<표 1>

구 분	지주회사 요건
규 모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부채비율	- 부채비율 100% 이하(단,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유예)
자회사 지분율	-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1999년4월 현재 상장기업은 30% 이상)
손자회사 보유	-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단,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손자회사를 허용)
자회사 이외의 주식 소유	- 자회사 이외에는 지배목적의 주식 보유 금지(단,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년간 유예)
기 타	- 채무보증: 30대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 - 자회사의 범위: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

제도에서 출발한다.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합계 규모가 큰 순서로 30개를 지정하여 이들 집단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있다(외형확장을 막자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라 하여 이들 규제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 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법은 상법·증권거래법·법인세법 등 지주회사 관련 타 법령과의 법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 경제현실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 이전에 해소되어야 할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지주회사제도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로 법 불일치 사항과 경제현실 미반영 부분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필요한 요건별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의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지주회사가 바람직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은 다음의 두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기업집단의 문제는 계열사간에 얽히고 설킨 출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 과정이 시장논리에 맞도록 추진해 가느냐는 문제일 것으로 지적하고 기왕에 출자한도까지 설정해가면서 계열사간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차제에 지주회사라는 대안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7월초에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처음 발표되면서 이러한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룹체제 아래서 결합재무제표의 공시는 분명히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기업집단들은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주어왔기 때문에 표준화된 자료를 내외에 발표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선단식경영을 하지 말라, 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을 없애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주체가 구조조정본부이듯이 그룹회장실 내지는 구조조정본부를 상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제에 정부나 공정거래당국이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실체가 있는 그룹이나 회장을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설립조건을 완화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책임이 분명해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면 결합재무제표는 불필요해지며 나아가서는 30대 기업집단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므로 규제의 대상을 5대 내지 10대로 축소하고 한국전력·포항제철·한국통신과 같은 (준)공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지주회사 요건별 개선점 검토

(1) 상장법인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5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인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30% 이상, 1999년 4월 1일 이후 상장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를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30% 이상으로 규제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정의함에 있어 자회사는 기한의 제한없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코스닥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원활히 설립·전환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당국에서도 1999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항을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하면서 자회사의 정의를 구체화 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시장의 차이는 있으나 공개법인으로서의 동일성을 인정 거의 모든 규정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법일관성 결여라는 한계를 가지는 법조항으로 한시적인 규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 지주회사를 이용한 경제력집중현상을 억제하지는 법 취지는 이해되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사는 주식분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비상장사와 구분하

여 상장·비상장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장사만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시점 전과 후를 구분하여 지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법 논리상 형식논리 측면에서 모순이다. 상장이라는 공개법인의 성질이 경제적으로나 법 실체적인 면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개법인은 공개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지 시점에 따라 공개유지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법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굳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의 지배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면 자회사 지분율은 시점에 상관없이 상장·비상장의 구분에 의해 차등 적용토록 하고 부채비율 등 다른 요건을 강화 혹은 신설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 형식논리상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법인세법(동 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정의함에 있어 「자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지주회사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에서의 자회사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은 1999년말 개정을 통하여 동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1999년 4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주회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고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인용·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항에서 자회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단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0% 기준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을 따르고 기간구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의를 따르고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달리 정의하고 있음은 상장자회사를 시점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것은 법 형식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합작법인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

합작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합작계약에 의해 외국법인과 공동(통상 50:50)으로 지배됨으로써 경영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지분율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합작법인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경영지배권을 일반적으로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외국 제휴선과의 공동 경영적 성격이 강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 있다는 특성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가 지나치게 많은 업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각화 규제의 목적이라면 합작법인의 경우는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국내의 지배주주(또는 지주회사) 독단이 아니라 합

작투자한 외국의 자본가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단적 지배라는 우려는 반감되어 질 것이다. 또한 합작계약시 양측 당사자의 소유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양측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부합된 경우에만 지분변경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작 초기의 지분율을 변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합작법인의 공동 경영적 성격과 의사결정의 선진성, 지배권 변경의 애로 등 그 특성은 분명 일반 국내법인과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회사 지분을 적용시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작법인은 외국인의 요구조건과 협상 정도에 따라 지분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타 국내지분의 포함여부, 당해 회사의 계열편입 여부 등을 감안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어 현행의 지분율 50% 이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실상 50:50의 합작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작추진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외국인과 동일인의 지분이 50% 미만의 동등지분으로서 동일인이 공동 최다출자자이나 외국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이거나 ② 외국인의 지분합계가 동일인 지분보다 많은 경우로서 외국인 1인이 최다출자자이나 동일인이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③ 동일인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보다 많은 경우로서 외국인의 다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이 50% 미만의 최다출자자로서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현행 50% 이상 유지 요건하에서는 동 형태의 자회사를 가진 존립중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고(초기 합작계약과 다른 지분변동이므로 사실상 불가능) 존립중인 지주회사는 동 형태의 신규합작 추진은 불가능하다

셋째,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합작법인을 주권상 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지분율요건으로서 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상장이 가능하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합작법인이 거 래소시장에 상장 혹은 코스닥 등록 등 기업공개 를 추진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요건에 의하면 일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지분분산이 30% 이상 혹은 10% 이상(1,000만주 상장, 500 만주 등록) 등의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므 로 공개 후에도 현행 규정에 의한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합작법인은 공개 전 동일인이 70~80% 수준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 만 공개가 가능하다. 합작법인의 일반적 형태인 50:50이거나 50% 미만의 동등지분의 합작법인은 공개시 지분분산요건으로 인해 동일인 지분 은 당연히 50% 미만(예: 50:50인 경우 일반분 산 30%를 제외하면 지주회사 추진주체가 보유 할 수 있는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최대 35% ((100-30)÷2)입)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합작법인의 경우 다양한 합작형태와 기 업공개시의 제한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달리 정 하는 것은 법운용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 하여 ① 자회사 지분을 산정시 외국법인과 국내 법인의 지분을 합계하여 적용(50% 이상)하게 하거나 국내법인의 지분율만 30% 이상으로 조 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만약 1인이 현실적인 법 운영상 법에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 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3) 전환과 설립의 개념차이 해소

금년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기업구조조 정 촉진차원에서 상법상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인 경우에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을 등 제한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 고 있다. 존속하는 회사가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과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전환이나 설립 등 어느 경우에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상법상 분할방 법을 통해 전환뿐 아니라 신규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사항에 대해 유예기 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전환이나 신설 을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것 이다.

첫째, 존속하는 회사가 상법상 분할에 의해 지 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전 환의 과정만 다를 뿐 체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는 기존회사의 주식부문을 그대로 두고 사업부문을 1개 혹은 수개의 사업부로 분할하고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은 지 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지주회사체제를 완성 하게 된다. 설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회 사가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문만 떼어내어 회사를 설립하면 신규설립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주주는 전 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배주주가 가진 다른 회사의 주식과 지주회사 주식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방법과 절차의 차이일 뿐 지주회사체제 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 이다

둘째, 자본시장 구조상으로는 경제현실상 신설

을 통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선호되고 있음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인적분할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데 주주입장에서는 상장법인 주식이 비상장에 비해 환금성과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에 분할될 회사도 분할 즉시 상장(이 경우 재상장이라 함)되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비상장으로 남게 되면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시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분할주체는 당연히 재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할된 회사를 재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상장규정(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서의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만이 가능하다

실례로 동 규정의 부채비율요건(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의2(주권의 재상장심사요건 제2항 제5호가목)에 따르면 분할된 회사의 부채비율은 동 업종 상장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가능한데 이를 전환과 신설의 경우를 구분하여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식부문이 존속회사로 남아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분할된 회사의 부채비율은 동 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 수준으로 배분하고 남은 부채는 주식부문인 지주회사가 떠안게 되는데 이 경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인 100% 미만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동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여 주식부문을 지주회사로 신설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주식부문이 떨어져 나와 신설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식부문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맞추어 분할하고 나머지 분할된 회사의 부채비율도 동 업종 평균부채비율로 하여 남은 부채는 존속하는 회사가 떠안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 구성이 훨씬 용이

하게 될 것이다

전환보다 신설이 선호되는 또 다른 실례로는 기존의 회사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분할 후에도 계속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설의 방법이 더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식부문이 잔류하고 사업회사가 분할되어 신설되면 신규설립에 해당되어 새로운 상호를 작명하고 회사로고도 새로 제정해야 하는 등 신규설립에 준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가 누리던 일반소비자에 대한 인식정도 즉 회사의 브랜드가치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과거 수십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해온 브랜드 가치를 분할로 인해 일시에 사장시키는 것은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므로 이를 계속 영위키 위해서는 사업회사가 분할의 주체로서 상호를 유지한 채 잔류하고 주식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셋째, 회사분할에 의한 전환의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설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물적분할, 인적분할 및 분할 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행위제한의무를 유예」한다는 법 취지를 전환과 설립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가 설립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1998년말 상법 개정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동 분할제도를 회사가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는데 동 제도를 통한 전환은 구조조정에 해당되고 신설은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성립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분할에 의한 방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개정안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환과 신설이 모두 회사분할, 즉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본다면 전환과 신설을 구분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 결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나 부채비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란 용어는 실체가 불분명한 애매한 개념이다. 현행법에서는 경제력집중이란 단순히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규모 확장에 의미를 두고 있는 듯 하다.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자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수준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한 요건조차도 선진국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계수적 입증에 예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제도는 순환출자에 의해 엮여져 있는 기업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기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역제가 아니라 장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우선 경제현실상 합당치 않는 부분부터 해소되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은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 하여금 고율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할 수가 있다. 만약 연결납세제도가 당장에 실현 불가능하다면 상장법인의 지분율은 지주회사의 설립 전후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평균수준인 30%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자회사가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공동경영적 성격이 인정되어 지분을 산정시 외국 합작선의 지분율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 요구하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50:50의 합작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을 규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는 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수단으로 하건 또는 기존 계열사 중 하나의 지주회사 전환을 수단으로 하건 차이를 들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전환에 대해서 부채비율이나 지분을 요건의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같은 유예조건을 허용하여야 한다. 즉 상법상 분할에 의한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전환 혹은 설립되면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전환과 설립이 모두 분할이라는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발생된 결과라는 점에서 설립도 전환과 함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공정**